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환경노동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1회용 컵 보증금제 관련 가맹본부의 책임 확대 >
■ 윤건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341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III . 검토의견	5
1. 1회용 컵 보증금제 관련 가맹본부의 책임 확대	5
※ 참고자료	12

I. 제안경위

2024년 12월 10일 윤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1회용 컵의 재활용을 독려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됨. 국민 대부분이 하루에 한 번은 사용하게 되는 1회용 컵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은 국민 개인의 노력에 맡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임. 특히 1회용 컵을 사용하여 음료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노력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음.

현행법은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제품의 판매 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이 자원순환보증금이 컵의 회수율과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임.

제도의 취지는 분명하나, 현실에서는 여러 어려움이 존재함. 실제 1회용 컵의 사용량이 많은 매장 중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비중이 높음. 문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본사가 판매하는 1회용 컵을 사용하도록 한정하여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음. 이로 인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는 구입과 처리 비용이 싼 환경부장관 지정 표준용기를 사용하고 싶어도, 가맹거래 관행 상

한계가 있음.

더욱이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의 주체가 본사인지 가맹사업자인지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해 1회용 컵 보증금제의 부담이 모두 가맹사업자에게 떠넘겨질 우려도 존재함.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판매에 사용하는 1회용 컵에 대하여는 자원순환보증금 대상사업자 포함 주체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한정하여 판매한 1회용 컵의 경우에는 가맹본부를 사업자”로 간주되도록 하여 프랜차이즈의 1회용 컵 사용 억제를 통한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가맹점 본사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Ⅲ. 검토의견

1. 1회용 컵 보증금제 관련 가맹본부의 책임 확대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경우 자원순환보증금제 대상 사업자를 가맹점사업자가 아닌 가맹본부¹⁾로 간주하여 1회용 컵 보증금제 관련 가맹본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2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비용기·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① 용기·1회용 컵(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비용기·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①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	2. -----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대상 사업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함)⁴⁾는 1회용 컵을 사용하여 음료 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매장(업종은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로 한정)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의 사업자 등으로,

2025년 6월 말 기준 선도지역인 세종, 제주 내 총 712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 중 직영점사업자(가맹본부)는 82개소, 가맹점사업자는 592개소, 그리고 자발적 참여 매장은 총 38개소임.

[세종, 제주 내 보증금대상사업자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5. 6. 기준			비고
		합계	세종	제주	
대 상 매 장	직영점	82	16	66	
	가맹점	592	157	435	
	자발적 참여매장	38	-	38	
소계(a)		712	173	539	
제외사유	읍·면 ^{세종} /면 ^{제주}	51	32	19	
	10㎡ 미만	1	1	-	
	보세구역(공항)	2	-	2	
	다회용컵 전환	41	10	31	4개 브랜드
	휴점, 폐업	143	54	89	
소계(b)		238	97	141	
합계(a+b)		950	270	680	

주 : 1회용컵 지급관리시스템 및 조사 등을 기반으로 작성하여 실제와 다를 수 있음
자료 : 환경부

용컵 보증금제 추진방안」 발표를 통하여 세종시와 제주도를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선도지역에 대한 성과 평가 후 전국적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계획을 변경한 바 있음.

-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등) 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맹사업(업종은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로 한정한다)을 하는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로서 가맹본부와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나목 또는 바목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각 호에서 정한 규모 미만인 사업자 중에서 1회용 컵 사용량, 매출규모, 매장 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보증금대상사업자 중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가맹계약에 따라 영업 방식에 대한 결정 권한이 실질적으로 가맹본부에 있어⁵⁾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예를 들어, 현행법 제15조의2제2항⁶⁾은 1회용 컵 보관(‘컵’의 형태) 및 재활용(인쇄 여부, 재질 등)의 용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표준용기를 지정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참고자료 2),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가맹계약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판매하는 1회용 컵을 사용하도록 기속되어 가맹본부가 표준용기를 채택하지 아니하는 한 자율적으로 표준용기를 사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⁷⁾

이에 가맹본부가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가맹본부의 책임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한정하여 공급한 1회용 컵의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아닌 가맹본부를 보증금대상사업자로 간주하려는 것으로,

각 프랜차이즈가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부합하도록 1회용 컵의 공급

5)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의 영업 방식을 준수하여야 함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빈용기·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② 환경부장관은 용기등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제품에 사용된 용기등 중에서 규격이 통일되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등(이하 “표준용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표준용기를 제품에 사용하려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7) 참고로 2022년 12월부터 선도지역으로서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실시 중인 세종, 제주의 프랜차이즈 53개소 중 종이컵의 경우 82%(42개소), 플라스틱컵의 경우 73%(36개소)가 표준용기를 채택한 것으로 나타남.

및 보관 체계, 보증금의 부과 및 반환, 납부를 위한 회계 처리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영업 방식을 개편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1회용 컵 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회용품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가맹본부의 필요 역할]

< 체계 구축 >

- ① 본사에서 1회용 컵을 공급하는 점을 감안하여 보증금 환불문구 표시라벨 일괄 주문·공급 및 보증금·처리지원금 등 일괄 납부 처리
- ② 보증금 부과, 반환, 회계처리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키오스크, POS 등) 개선
 - ※ 주문 메뉴에서 1회용 컵 선택(보증금 포함) 버튼 추가, 1회용 컵의 경우 매장 내 이용 제한 안내 등
- ③ 1회용 컵 판매, 반환 등 정보의 취합 제공

< 사업방식 개선 >

- ④ 표준용기로의 전환 및 본사에서 처리지원금 지원
 - ※ 이전에는 본사에서 플라스틱컵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였으나,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및 처리지원금 납부에 따라 보증금 컵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면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22.6월))
- ⑤ 1회용 컵 대신 테이크아웃 다회용 컵 등 대체재 도입 허용 및 지원

< 가맹점사업자 지원 >

- ⑥ 가맹점의 제도 이행시 부담 경감 지원(컵 회수함 등)
- ⑦ 소비자 및 가맹점에 대한 안내·홍보 등

자료 : 환경부

예를 들어, 현행 1회용 컵 보증금제 하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 보증금대상사업자로서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1회용 컵에 반환 처리를 위한 표시라벨을 직접 부착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른 경우 가맹본부가 보증금대상사업자로서 표시라벨을

부착할 책임이 있으므로, 1회용 컵에 표시라벨을 일괄 부착한 후 각 가맹점에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부가 업무 수행을 효율화하는 동시에 가맹점사업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에 따른 경우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처리지원금(1회용 컵 등의 재활용을 위하여 이를 운반 및 처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비용)⁸⁾⁹⁾을 가맹본부가 부담하게 되므로, 가맹점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¹⁰⁾도 기대됨.

다만, 환경부는 제도 이행의 핵심인 보증금 환불, 일회용컵 보관 및 인계 등의 이행주체가 매장의 관리·책임¹¹⁾이 있는 가맹점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자를 보증금대상사업자로 보는 현행 규정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며,

아울러, 보증금제 시행 이후, 가맹사업 본부 측에서 매장의 일회용 컵을 표준용기로 지속 전환하고 있는바(참고자료 2), 우선적으로 표준용기 사용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가맹사업 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표준용기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빈용기·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④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 용기등의 회수, 선별, 보관, 재활용 등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물가변동 등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판매자의 경우 1회용 컵 등의 재활용을 위하여 이를 운반 및 처리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처리지원금”이라 한다)

9) 표준용기 : 4원/개, 비표준용기 : 10원/개

(다만, 현재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여 표준용기에 대하여는 처리지원금 전액 지원)

10)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이전에는 가맹본부가 1회용 컵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였으나,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라 현재 폐기물부담금이 면제(2022. 6. 시행령 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맹본부로 하여금 처리지원금을 부담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일회용컵 판매, 보관, 회수 등 제도의 모든 절차를 가맹사업자가 수행하고, 최종 소매 판매 또한 가맹점사업자이므로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상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사업자를 보증금 대상 사업자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문 의 처
02)6788-5546

※ 참고자료

1. 1회용 컵 보증금제 개요¹¹⁾

□ 법적 근거('20.6.9. 자원재활용법 개정)

- (법 제15조의2)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22.12.2. 시행)

* (기존) 빈용기(빈병) 보증금제 + (신설) 1회용 컵 보증금제 → 자원순환보증금제 시행

□ 1회용컵 보증금제 주요내용

- **(개요)** 1회용 컵으로 음료 판매 시 **보증금을 포함하여 판매**, 소비자가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반환**하고, 회수된 컵은 재질별로 재활용
- **(적용대상)**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수 100개 이상인 사업자 등
※ 플라스틱컵과 종이컵 등 1회용 컵을 대상으로 하며, 사용 후 수거·세척하여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
※ '22.12.2일부터 세종시·제주도에서 선도적으로 시행
- **(표준용기)** 보관 및 운반 편의를 위해 **최소 크기**를 정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해 **표준용기 기준안 마련***
* (플라스틱컵) 재활용의 용이성을 위해 투명 페트, 표면 인쇄가 없는 컵 (종이컵) 재활용 공정을 고려하여 PE 등 불수용성 코팅을 단면까지 허용하고 표면 인쇄는 최소화(15% 미만)
- **(보증금액)**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와 주요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할인 금액이 300원 내외인 점 등을 고려하여 **300원으로 설정**
* 소비자 1,23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최대지불의사 금액이 341원으로 조사('21.11, 한국행정학회)
- **(위변조 방지)** 컵 반환 정보를 관리하는 바코드와 위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된 위변조 방지 스티커가 부착된 컵으로 음료 판매
- **(반환절차)** 매장 **POS기(Point Of Sales)** 등으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스캔**하고 **보증금을 반환**(계좌이체 또는 현금), 한 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인식되어 반환 불가

11) 출처 : 환경부

2. 표준용기 개요 및 현황¹²⁾

□ 개요

- 보증금제를 통해 일회용컵의 사용은 줄이되, 불가피하게 사용된 **일회용컵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표준용기 지정 가능** (법 제15조의2제2항)
- 겹쳐서 **보관하기 용이한 ‘컵’의 형태**(최소 크기 설정), **재활용을** 저해하지 않는 **인쇄여부·재질(종이·플라스틱)** 등을 고려

□ 표준용기 기준

구 분		플라스틱컵 (차가운 음료)	종이컵 (따뜻한 음료)
① 색깔·재질		○ 투명 PET ○ 표면 인쇄 금지	○ 유색 원지X(표백 크라프트 펄프) ○ 표면 인쇄 15% 미만
② 지름	상단	○ 78mm 이상	○ 80mm 이상
	하단	○ 48mm 이상	○ 50mm 이상
③ 높이		○ 65mm 이상	○ 94mm 이상
④ 용량		○ 7oz 이상	○ 8oz 이상

※ 표준용기의 지정·등록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환경부공고 제2022-637호, '22.11.10) 재구성

□ 표준용기 사용 현황('25.6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 세종, 제주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대상이 되는 브랜드 53개소* 확인 결과 종이컵 42개 브랜드(82%), 합성수지컵 36개 브랜드(73%) 표준용기 사용중

12) 출처 : 환경부